

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 조〉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지금까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있어 응시수수료를 2,000 원으로 하여 왔으나, 그 수수료만으로는 등 시험 시행 경비를 확보할 수 없어 해마다 소요예산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 및 해당경비 확보 측면에서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골자

가. 1인당 시험 응시수수료를 2,000원을 20,000원으로 변경함.

3. 개정근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1991년 10월 8일, 교육부령 제604호) 제21조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 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공무원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인당 2,000원”을 “1인당 2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수수료징수) 충청북도교육감 이 실시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u>2,000원</u> 의 응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2조(수수료징수) 1인당 <u>20,000원</u> 의
제3조 생 략	제3조 현행과 같음
	부 록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 한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